

청소년유해약물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 (제25조제2항 관련)

1. 주류

가. 표시문구

- 1) 문구는 "19세 미만 판매 금지" 또는 "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"로 한다.
- 2) 군납용으로서 "군인 외의 사람에게 판매 금지"의 문구를 표시한 경우에는 1)의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.

나. 크기

- 1) 문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각형(테두리의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한 사각형으로 한다) 안에 표시한다.

용량 기준	글자 크기	사각형 크기	전면 코팅용기 (캔류, 코팅 병 등)
300ml 이하	12포인트 이상	2cm ² 이상	같은 용량 기준보다 글자 크기는 2포인트 이상, 사각형 크기는 1cm ² 이상 각각 크게 한다.
300ml 초과 500ml 이하	14포인트 이상	3.5cm ² 이상	
500ml 초과 750ml 이하	16포인트 이상	5cm ² 이상	
750ml 초과 1 l 이하	18포인트 이상	6cm ² 이상	
1 l 초과	20포인트 이상	7.5cm ² 이상	

- 2) 글자체는 견고딕체를 사용한다.

다. 색상

- 1) 사각형 테두리 내 배경색은 상표 도안의 색상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 한다.
- 2) 문구의 색상은 사각형 배경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 한다.

라. 위치 : 제2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(이하 이 표에서 "청소년 유해표시 의무자"라 한다)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

2. 주류 외의 청소년유해약물등

구분	표시문구	표시방법		
		크기	색상	위치
가. 담 배	"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"는 내용	담뱃갑 뒷면 단면 면적의 1/5 이상	마탕색과 보색	담뱃갑 뒷면

	이 포함되어야 한다.	크기의 사각형 안에 기재		
나. 부탄가스	"이 제품은 흡입 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. 이 제품을 흡입한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,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"로 한다.	용기 면적의 1/2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	바탕색과 보색	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
다. 부탄가스 외 환각물질(공업용은 제외한다)	"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."로 한다.	업계 자율로 하되, 다른 의무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.	바탕색과 보색	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
라. 법 제2조제4호가목5)의 약물 및 같은 호 나목의 물건	"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."로 한다.	상표 면적의 1/1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	바탕색과 보색	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
청소년유해약물 또는 청소년유해물건 중 해당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의 특성상 표시문구나 표시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다.				